

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해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48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11.

발의자 : 김해영 · 윤관석 · 권미혁
서영교 · 김상희 · 도종환
강병원 · 전혜숙 · 박완주
박광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「민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발기인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.

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금치산자·한정치산자”를 “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발기인) ① (생 략)</p> <p>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미성년자·<u>금치산자</u>·한정치산 자</p> <p>2. ~ 6. (생 략)</p>	<p>제4조(발기인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피성년후견인</u>·<u>피한 정후견인</u>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